

총 무 처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720-4097

문서번호 조기 12210 - 27

시행일자 1996. 2. 6.

받 는 곳 받는곳 참조

참 조 행정관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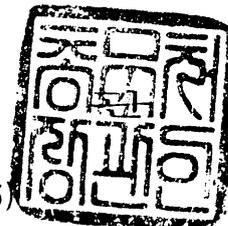
| | | | | |
|-----|----------|---------------------|-------|-----|
| 선결 | 조정관 | 자 | 지시 | |
| 접 | 일자 시간 | '96. 2. 7. 15:03 | 결재·공람 | 정무관 |
| 수 | 번호 | 653 | | 과장 |
| 처리과 | 총-1외 | | | 사무관 |
| 담당자 | | | | |

제 목 '96 정부조직관리지침 (국무총리지시 제1996-4호) 통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96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총 무 처 장



받 는 곳 가(-03-04), 나(01~18), 다(01~18), 라(01~05)

추 신 별책 『지방이양관련목록』 별도 송부

국무총리지시 제'96-4호

199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1996. 2

총 무 처

'96년도 정부조직관리 기본목표

- 세계화·민주화·지방화를 위한 행정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 정부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의 기초아래
 -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 발전을 주도하는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 국민가까이 다가가는 민주적 봉사행정체제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여
- 첫째, 행정기구 및 정원의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기구확대 또는 증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정원을 상계활용한다.
- 둘째, 행정수요변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정부조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별 하부단위 조직에 대한 자율적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국민가까이 다가가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계층 축소 및 권한의 하부위임을 촉진하고 일선실무 인력 위주로 정원을 운영한다.

넷째,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다섯째, 정부기능 감량을 위한 민간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기능 특화를 위한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한다.

여섯째, 내실있는 정부조직진단으로 업무분담의 형평성 확보 및 행정 수요와 연계된 조직관리체제를 확립한다.

차 례

- 1 기구·정원의 동결기조 유지
- 2 탄력적·자율적 조직관리체제 확립
- 3 국민가까이 다가가는 민주·봉사행정체제 구축
- 4 행정규제의 완화
-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 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7 행정사항

1 기구·정원의 동결기조 유지

○ 신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현수준 유지

가. 직제개정시 상계원칙의 철저한 적용

(1) 각 부처는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제를 개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정원을 상계·활용한다.

* 행정부공무원 정원의 증감추이

| 구 분 | '91. 12 | '93. 2 | '93. 12 | '94. 12 | '95. 12 |
|-------|----------|------------------------|-----------------------|-----------------------|-----------------------|
| 국가공무원 | 553, 104 | 566, 310 (+13, 206) | 568, 413 (+2, 103) | 567, 435 (-978) | 558, 489 (-8, 946) |
| 지방공무원 | 286, 697 | 310, 957 (+24, 260) | 316, 415 (+5, 458) | 325, 028 (+8, 613) | 331, 273 (+6, 245) |

(2) 각부처는 직제개정 요구시 분야별 미래행정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조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직제개정을 검토·요구하도록 한다.

(3) 각 부처는 행정수요의 감소 및 사무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신규증가 수요에 활용하는 등 조직관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나. 기구·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 철저

-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직제통칙) 제9조의2에 의거, 익년도 소요정원 심사와는 별도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당해사업의 필요성과 기구·인력의 소요에 관하여 총무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내실있는 정부조직진단 실시

- (1) 총무처장관은 직제통칙 제27조의2에 의거, 정부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되, '9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진단한다.
 - (가) 행정환경변화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제분야에 대한 집중진단
 - (나) 1994. 12. 3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분석
 - (다) 민간 및 지방이양대상기능의 적극 발굴
- (2) 조직진단은 자료수집·분석과 현지실사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지실사 진단은 6~7월중에 실시한다.

(3)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을 보강대상 분야, 감축대상 분야, 현상유지 분야로 구분·관리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연계된 장·단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직관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최초 직제개정시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분야별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라. 위원회 신설억제 및 운영의 활성화

(1) 제8차('95)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 중 조치되지 않은 위원회는 조속히 법령조치하도록 한다.

* 제8차('95) 정비대상위원회중 미조치위원회현황 별첨 [별첨2]

(2) 위원회의 신설은 가능한한 억제하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한다.

(가) 위원회는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거나 관계관회의, 협의체 운영, 분과위 증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행정관청을 기속하는 결정을 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는 설치근거규정을 대통령령이하에 둔다.

(라)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신설하는 경우라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한시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3) 위원회의 구성·직급 등의 적정화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가) 위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구성하고 가능한 한 민간위원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 특히 사회적 지명도 보다는 현실적으로 정책반영에 유용한 현실정책 감각이 있는 위원의 참여확대

(나)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은 권위부여를 위한 고위직화를 지양하고, 심의의 실효성 확보에 적합한 직급으로 조정·운영한다.

마. 정부산하단체의 효율적 관리

(1) 각 부처는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조기01210-177, '92.9.7)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산하단체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2) 총무처는 정부산하단체 신설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리대상 단체를 정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국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하단체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2 탄력적·자율적 조직관리체제의 확립

- 행정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구축 및 부처별 조직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확립

가. 부처별 조직의 책임운영체제 확립

- (1) 각 부처는 부처별 조직관리·운영의 자율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총무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4항 단서규정의 "소관기능 및 직급별 정원범위내 과단위기구개편 직제 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나. 탄력적 조직관리체제의 적극 활용

- (1) 각 부처는 행정수요 변동시 기구의 신설이나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대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일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새로운 업무의 발생시 직제통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간 정원의 상호이체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 (2) 또한, 각 부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제통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3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민주·봉사행정체제 구축

- 국민 가까이 다가가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여망에 부응·봉사하는 민주·봉사행정체제의 구축

가. 행정계층의 축소, 권한의 하부위임 등을 통한 상하정보교류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적시성을 확보한다.

- 중간관리계층 또는 직위의 신설금지 및 단계적 감축 추진

나. 정원조정시에는 상위직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실무 인력 보강에 역점을 두어 민원처리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국민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의 남설을 억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

가. 파급효과 및 국민혜택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1) 각 부처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 국민생활불편분야 및 규제완화 성역으로 여겨져온 금융·토지분야의 규제완화에 주력한다.

(나) 중소기업 활동지원 연관 분야별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나. 규제신설시 사전심사 강화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시 규제에 따른 국가·사회적 이익과 국민의 불편부담을 비교형량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규제입안책임자의 성명을 명기하는 등 『규제실명제』 실시로 규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2)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시한을 명기하는 규제 일몰(sunset) 제도를 도입 적용한다.

※ 세부내용은 『'96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수립』 기본지침('96. 1. 11) 참조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 가. 각급 행정기관은 소관행정권한중 하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추진하도록 한다.
- 나. 위임 또는 위탁은 사전에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당해사무 수행능력, 수용태세 등을 정밀분석한 후 행하고, 위임 또는 위탁과 동시에 인력·예산 등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사전보고의 요구 등 불필요한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하여 위임·위탁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지침의 제공, 교육의 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행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기능 특화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의 적극 추진

가. 이양대상사무의 적극 발굴

- (1) 재정경제원 등 15개 부처와 내무부가 지정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 기능을 [별첨 6] 사무구분 판단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 중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중·단기 이양가능사무 포함)를 발굴하여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 지방이양 대상사무 예시 >

- 『중앙·지방사무총람』에 수록된 국가·지방위임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사무
 - 중앙기능 : 국가존립·유지·발전기능, 전국적 통일성·광역성·전문성을 요하는 기능,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등
 - 지방기능 : 지역시책,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지역별 특화가 가능한 기능, 인·허가 및 주민생활·주민복지 관련기능 및 정책의 구체적 집행기능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 개별 행정작용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 현행 개별 행정작용 법령에 자치단체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관행 또는 유권해석상 지방위임사무로 구분한 사무중 행정환경·여건등의 변화로 지방사무화함이 적절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소관부처에 이양을 요구한 사무
- 중앙부처 자체계획에 따라 지방이양 하기로 계획된 사무

(2) 각부처는 『중앙·지방사무총람』상의 국가사무 및 지방위임사무를 재검토하여, 소기능별로 국가계속수행사무(이양불가 사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이양 대상사무, 폐지사무, 민간단체 위임·위탁사무 등으로 구분·체계화 하되, 지방이양 가능사무를 발굴하여 이양 조치하도록 한다.

*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중·단기 지방이양 계획을 수립하여 이양하도록 하고 국가계속수행사무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양여부 평가

< 예 시 >

- [즉시이양 대상사무 : '96년도중 이양예정사무
- [단기이양 대상사무 : '98년도까지 이양예정사무
- [중기이양 대상사무 : 2000년도까지 이양예정사무

<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절차 예시 >

-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포함) 중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무는 폐지 추진
 - . 행정의 간소화, 규제완화, 간여범위 축소 차원에서 필요성 여부 검토
- 민간단체 이양·위탁, 민영화 등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선행 (제3섹터 포함)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산하단체의 기능 재검토, 공사화 계획등과 연계 추진
-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무 선별
 - .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포함)에서 발굴
 - . 사무배분원칙·기준·지표 등 활용 [별첨 6]
-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분류 (지방자치법령상의 예시사무 참조)
- 외국의 실시사례와 비교·검토·분석
- 이양확정된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이양 (관련법령 등 개정)
- * 단계적 이양 방안
 - . 단순집행적 사무 : 즉시 이양
 - . 경험·능력이 필요한 사무 : 행정경험 축적후 이양
 - . 전문적 지식·기술등이 필요한 사무 : 인력보강, 기술축적후 이양
 - . 지방위임사무 우선 이양
 - . 업무가 단순화 또는 표준화 되어 있는 사무 우선이양

나. 지방이양 확대기반 조성

(1) 총무처는 지방이양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거쳐 이양사무를 확정한다.

- * 중점추진분야 :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기능, WTO체제에 부응하는 지방산업육성 지원기능, 지방중소기업 지원기능, 국제경쟁력 제고 관련기능, 인·허가 및 주민생활·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시책적 기능, 지방의 존립·지원 및 교육활성화 관련기능등
- * 중점 추진분야별 지방이양 대상 발굴 및 이양추진 사업은 연차적·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 법제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령규정 형식을 강구하고, 각부처는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이양조치시 법제처의 새로운 법령규정 형식을 따른다.

다. 사전·사후관리체제 강화

(1) 지방이양시 관련사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기능별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업무 처리체계를 합리화 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며, 이양사무에 대한 간여·규제·사전통제를 최대한 지양한다.

(2) 각부처(특히, 재정경제원)는 국가보조사업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3) 각부처는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와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 관련법령 개정시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

(나) 업무편람이나 처리지침 등 구체적 업무처리기준·절차·방법과 법령해설, 행정판례 등 제공

(다)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 조정 통보 및 관련 인력·예산·정보·기술 제공

(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마)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무는 조례(안) 제공

(바) 이양사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부처별 사후관리 이행

(4)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절차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한다.

7 행정사항

가. '97년도 소요정원 제출

- '97년도 소요정원은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하여 심사할 계획이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요정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96.4.30까지 '97 소요정원 (안)을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나. 기구·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시에는 [별첨1] 기구 개편이수반되는사업등의사전협의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총무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기 바람.

다. 위원회정비 이행 철저

- 제8차('95)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아직 조치되지 아니한 [별첨2]의 위원회에 대하여 각 부처는 '96.6말까지 정비토록 하되,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법개정시에 반드시 조치하기 바람.
- 다만, '96.6말 현재 조치되지 아니한 위원회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최초법률개정시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를 [별첨 3]의 서식에 의하여, '96.7.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

- (1) 각부처는 '95년도 위임·위탁 추진실적(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 포함)을 [별첨4]의 <서식2>에 의하여 작성, '96.2.29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2) 각 부처는 '96년중에 조치 예정인 위임·위탁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을 [별첨4]의 <서식1>에 의하여 작성, '96.2.29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마. 지방이양

- (1) 각 부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지방이양 추진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 (별책, 『지방이양관련목록』 참조)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양된 사무는 그 내용을 총무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2) 이양대상 부처는 소관사무에 대한 이양여부 검토결과를 [별첨5]의 <서식1.2.3>에 의하여 작성, '96.3.30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지방이양 대상 부처

| 이양대상 부처 (15개 부처) | | 기타 부처 (20개 부처) | |
|------------------|--|----------------|--|
| 분야별 | 부처명 | 분야별 | 부처명 |
| 지역산업 경제분야 |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 외교·국방 |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병무청 |
| | | 국내질서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 | | 정책조정· 지원 | 총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
| 지역사회 문화분야 |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 재정·금융 | 국세청, 관세청 |
| | | 사회간접 자본 | 철도청 |
| 지방관리 분야 | 내무부, 조달청 | 고도의 전문기술 |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계청, 특허청, 공업진흥 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

(3) 내무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부처(15개)의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별첨5]의 <서식4>에 의하여 작성, '96.3.30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등 중복된 이양희망사무 제외
(별책, 『지방이양 관련목록』 참고)

(4) 각부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을 [별첨5]의 <서식5>에 의하여 작성, '96.3월말까지와 9월말까지 각각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바. 협 조 사 항

- 각 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사. 참 고 사 항

(1) '96년도 복수직급제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직급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94년도이후 시행해온 주요과장·계장직위 복수직급제의 '96년도 계획분은 금년도 5~6월 중에 관련직제개정을 거쳐 시행함.

(2) 운전원 정원 감축

- 공무원 출퇴근용 관용승합차량 감축에 따라 감축되는 운전원 정원은 각 부처가 최초 직제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 감축토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조치되지 아니한 정원에 대해서는 총무처가 5~6월중 일괄직제개정을 통하여 조치함.

【 별첨 1 】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 집행지침

1. 제도의 목적

- 정부조직관리의 장기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

2. 근 거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9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법령의 제정·개정, 청사의 신·개축 또는 시설·장비도입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총무처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3. 협의대상

-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수반이 예상되는 사업”
 - 향후 직제개정이 필요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한 청사개축이나 신축이전 등 기구신설이나 인력변동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제외함.
 - 계속사업의 경우 변동사항여부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역도 포함

(3) 내무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부처(15개)의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별첨5]의 <서식4>에 의하여 작성, '96. 3. 30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등 중복된 이양희망사무 제외
(별책, 『지방이양 관련목록』 참고)

(4) 각부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을 [별첨5]의 <서식5>에 의하여 작성, '96. 3월말까지와 9월말까지 각각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바. 협 조 사 항

- 각 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사. 참 고 사 항

(1) '96년도 복수직급제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직급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94년도이후 시행해온 주요과장·계장직위 복수직급제의 '96년도 계획분은 금년도 5~6월 중에 관련직제개정을 거쳐 시행함.

(2) 운전원 정원 감축

- 공무원 출퇴근용 관용승합차량 감축에 따라 감축되는 운전원 정원은 각 부처가 최초 직제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 감축토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조치되지 아니한 정원에 대해서는 총무처가 5~6월중 일괄직제개정을 통하여 조치함.

4. 협의시기

-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서 제출시에 동시 제출

5. 협의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개요
 - ① 목적 ② 필요성 ③ 사업기간(준공예정일자등) ④소요예산(총사업비)
 - ⑤ 기타 관계부처협의여부, 자원조달방안등
 - 예상되는 기구인력소요 및 인력활용계획
 - ① 기구인력소요의 필요성 및 그 규모
 - ② 소요제기 기구인력에 대한 설명자료
 - * 주요업무내용, 유사기구와 인력비교, 해당인력의 변화추이 등
 - ③ 기존 기구·인력의 활용계획
 - * 기관내 또는 기관간 유사중복 및 기능감소분야의 상계조정방안 등
 - ④ 기타 외국의 사례등 소요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 첨부된 서식1에 의거 작성·제출

6. 행정사항

- 총무처는 각 부처로부터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의 필요성 및 기구·인력의 소요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
 -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경제원에도 통보
-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처의 해당년도 직제 개정시 조치

< 서식 1 > ○○부 1996년도 신규사업 계획

1. 총괄표

| 사업명 | 사업기간 | 준공예정 | 소요기구 | 소요인력 | 비고 |
|------------------|---------------------------|-------------|------------------|--------------------------------|----|
| 1. ○○지방청 신축공사 | 2년 ('94.3 - '96.3) | 1996. 6. 30 | ○○지방청 (2국 5과) | 총 35명 (4급1, 5급이하34) | |
| 2. ○○사업소 신축공사 | | | | | |
| | | | | | |
| 계(건) | | | | 총○○○○명 (2급○, 4급○ 5급이하○○) | |

* 내역은 예시임.

2. 사업별 세부내용

가. ○○지방청 신축공사

(1) 사업계획 개요

(2) 예상되는 소요기구인력 및 인력활용 계획

나. ○○사업소 신축공사

【 별첨 2 】

제8차('95) 정비대상위원회중 미조치위원회 현황

총 43개 위원회

| 부 처 명 | 위 원 회 명 | 설치근거 | 정비구분 |
|---------------|---------------|------|------|
| 재정경제원 (11) | 산업정책심의회 | 대 령 | 폐 지 |
|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법 률 | " |
| | 보험심의위원회 | " | " |
| | 물가안정위원회 | " | " |
| |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 | 대 령 | " |
| |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 " | " |
| | 예산자문위원회 | " | " |
| | 공업입지정책심의회 | 법 률 | " |
| | 신경제추진위원회 | 대 령 | 직급조정 |
| |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 법 률 | 폐 지 |
| |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 | " | " |
| 조 달 청 (1) | 계약심의위원회 | 대 령 | " |
| 관 세 청 (1)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법 률 | " |
| 총 무 처 (3) | 상훈심의회 | " | " |
| | 공무원교육훈련심의회 | 대 령 | " |
| |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 법 률 | " |
| 공 보 처 (1) | 정부간행물심의조정위원회 | 대 령 | " |

| 부처명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정비구분 |
|--------------|---------------|------|--------|
| 농림수산부 (6) |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 | 법률 | 폐지 |
| |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 " | " |
| | 낙농심의회 | " | " |
| |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 " | " |
| | 초지조성심의위원회 | " | 직급하향조정 |
| | 사료품질관리위원회 | " | " |
| 산림청 (1) | 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 | " | 폐지 |
| 수산청 (1) | 내수면개발위원회 | " | " |
| 통상산업부 (9) | 영업심의회 | " | " |
| |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 " | " |
| | 광산보안위원회 | 법률 | " |
| | 광업개발심의회 | " | " |
| |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 " | " |
| | 연계무역추진위원회 | 대령 | " |
|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법률 | 직급하향조정 |
|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 | " |
| | 창업지원심의회 | " | " |
| 정보통신부 (2) | 전자계산조직위원회 | 대령 | 폐지 |
| |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 | " | " |
| 보건복지부 (1) |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법률 | " |
| 건설교통부 (6) |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 대령 | " |
|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법률 | 직급하향조정 |
|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 | " |
| | 국제공항운영협의회 | 대령 | 폐지 |
| | 유로도로심의회 | 법률 | " |

【 별첨 3 】

제8차('95) 정비대상위원회중 조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

부 처 명 :

| | |
|-------------------------|--|
| 정비대상위원회 | |
| 설치근거법령 | |
| 정비예정내역 | |
| 미조치 사유 또는 조치불가 사유 | |
| 향후조치계획 | |

※ 정비예정내역란에는 폐지, 통·폐합,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조정 등 기재

【 별첨 4 】

< 서식 1 >

'96 위임·위탁조치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

부 처 명

| 대상사무명 | 근거법령 | 위임·위탁유형 | 조치계획 |
|-------|------|---------|------|
| | | | |

< 작성요령 >

1. 위임·위탁 유형란에는 지방위임(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등), 소속 기관 위임(→ ○○청, ○○사무소 등), 민간위탁(→ ○○공사, ○○협회 등)을 기재
2. 조치계획란에는 『'96.○월중, 법개정후 시행령 개정』, 『'96.○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위임·위탁규정개정시 조치』 등으로 각 부처 조치계획을 시기·조치방법·선결사항 등과 함께 기재

< 서식 2 >

'95. 위임·위탁 실적

부 처 명

| 위임·위탁사무명 | 기능근거법령 | 위임·위탁근거법령 | 위임·위탁 일 자 | 수임·수탁 기 관 |
|----------|--------|-----------|--------------|--------------|
| | | | | |

【 별첨 5 】

지방이양 관련사무 보고작성 서식

< 서식 1 >

국가·지방사무 구분 총괄표

■ 총 관

○ 부 처 명 :

(' 96. 1. 30 현재)

| 구 분 | 계 | ③ 국가사무 | ④ 지방위임사무 | ⑤ 지방사무 | 비 고 |
|---------|---|--------|----------|--------|-----|
| ① 소기능수 | | | | | |
| ② 단위사무수 | | | | | |

■ 국가사무 수행기관 현황

(' 96. 1. 30 현재)

| 구 분 | 계 | ③ 중앙행정기관 | 부속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소속청장 | 타 기관탁위 | 민간단체등위탁 |
|---------|---|----------|------|----------|------|--------|---------|
| ① 소기능수 | | | | | | | |
| ② 단위사무수 | | | | | | | |

■ 지방이양 확정 및 이양대상사무 현황

('96. 1.30 현재)

| 구 분 | 합 계 | ⑥ 이양대상사무 | | | | ⑦ 이양확정사무 | | |
|---------|-----|----------|-----|-----------|------------|----------|-----|-----|
| | | 계 | '96 | '97 ~ '98 | '99 ~ 2000 | 계 | 완 료 | 추진중 |
| ① 소기능수 | | | | | | | | |
| ② 단위사무수 | | | | | | | | |

■ 사무구분별 지방이양 대상사무 현황

| 구 분 | ⑥ 지방이양 대상사무수 | | | |
|-------------|--------------|-----|-----------|------------|
| | 계 | '96 | '97 ~ '98 | '99 ~ 2000 |
| 계 | | | | |
| 국가 → 지방사무 | | | | |
| 지방위임 → 지방사무 | | | | |

< 서식1호 작성요령 >

- (1) ①소기능수, ②단위사무수 : 이양대상부처(15개)의 소기능 및 단위사무(『중앙·지방사무 총람』 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사무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구분하여 소기능수와 단위사무수를 기재하되, <서식2호>의 부처별 중기능별 집계와 일치하여야 함.
- (2) ③국가사무 :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청장이 직접처리하거나, 위임한 사무와 타 국가기관, 산하단체, 민간단체등에 위탁처리하는 사무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제외)
- (3) ④지방위임사무 : 중앙정부의 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기관위임사무)
- (4) ⑤지방사무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이양완료된 사무 포함
- (5) 법령상의 1개의 단위사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국가기관은 전국적, 광역적, 시·도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관장,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사항 관장 등)하여 처리하거나,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각각 1개 사무로 기재
(예) 수산동식물 월동장 또는 월하장 지정(수산청장 → 시·도지사)
: 국가사무(수산청) 1개, 지방사무(시·도) 1개 사무로 기재
- (6) 타 국가기관, 산하단체,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파악 기재
- (7) ⑥지방이양 대상사무 :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포함)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고유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려는 사무로 '96년도 이양, '97~'98년도 이양, '99~2000년 이양 등 중·단기로 구분 기재(이양확정사무는 제외)
- (8) ⑦이양확정사무 :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91~'95년도에 이양 확정된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완료, 추진중으로 구분 기재 (별책 참조)

< 서식 2 >

이양대상부처 의견조회 서식

- 부 처 명 :
- 대기능명 :
- 중기능명 :

| 소기능 | 사무구분 | 국가사무 | | 지방위임사무 | | 지방사무 | | 관계법령 | | ① 의견조회 |
|----------|------|------|------|--------|------|------|-------|------|--|-----------|
| | | 이양대상 | 이양확정 | 이양완료 | 사무폐지 | 내용변경 | 타법률승계 | 기 타 | | |
| 계 | | | | | | | | | | |
| ② 총 합 | | 이양대상 | 이양확정 | 이양완료 | 사무폐지 | 내용변경 | 타법률승계 | 기 타 | | |
| | | | | | | | | | | |

< 서식 2호 작성요령 >

* ① 의견조회 및 ② 종합란만 기재 (서식은 총무처 제공)

① 의견조회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에 한하여

- 1(이양대상), 2(이양확정), 3(이양완료), 4(사무폐지), 5(내용변경),
- 6(타법률 승계), 7(지방위임), 8(현행 동일), 9(기타) 중

해당번호 를 기재하고 2. 3. 4. 5. 6. 7은 확정 또는 완료일자(년·월·일)을

해당번호 밑에 ()속에 기재

* 2. 3(이양확정·완료)는 별책 『지방이양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 4. 5. 6. 7은 관계법령이 제·개정된 경우 『관계법령』란에 그 법령으로 수정하여 기재

- 1. 이양대상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고유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려는 사무
- 2. 이양확정 :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심의결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 3. 이양완료 : 법령상 처리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등)
로 개정된 사무
- 4. 사무폐지 : 법령상 관련조항의 삭제로 단위사무가 없어진 사무
- 5. 내용변경 : 해당법령의 개정등으로 단위사무의 사무명, 사무내용등이
변경된 사무
- 6. 타법률 승계 :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 승계, 통합등으로 근거법령이
바뀐 사무
- 7. 지방위임 : 해당법령의 개정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8. 현행동일 :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사무
- 9. 기 타 : 국가사무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산하단체, 민간에 위탁, 이양
등을 하고자 하는 사무

② **종합** : 중기능의 각 단위사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1)의견조회중 1. 2. 3. 4.
5. 6. 9를 집계 취합하여 기재

(예 시)

- 부 처 명 : 내 무 부
- 대기능명 : 4. 지방행정기획
- 중기능명 :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 사무구분 소기능 | 국 가 사 무 | 지방위임사무 | 지 방 사 무 | 관 계 법 령 | (1) 의견조회 |
|----------------------|---|---|--------------------------|------------------------------|------------------|
| 소1. 임용권 행사 | 1.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② | 1 |
| : | : | : | : | : | : |
| 소5. 인사운용 지도. 감독 | 4. 인사보수 제도 관계법령 제. 개정 | | | 헌법 제95조 | 8 |
| | 5. 조례규칙준칙 시달 | | | 지방공무원법 제81조 | 8 |
| | 6. 인사행정 지도. 감독 | | | 지방공무원법 제81조 | 8 |
| | 7. 인사교류 권고 |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① | 1 |
| | 8. 특수학교 졸업자 특별임용 승인 | | |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17조 ①4 | 2 (' 95. 12) |
| | 9.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응시 배수 조정승인 | 1.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⑬1호바목) | |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5조 ② | 2 (' 95. 12) |
| | 10. 특별승진 임용 승인 | 2.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⑬1호바목) | |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8의4 ①2. 4호 | 2 (' 95. 12) |
| 11.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 | 3.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⑬1호가목) | |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27조 제2항 | 2 (' 94. 12. 8) | |
| : | : | : | : | : | : |

| 사무구분 소기능 | 국 가 사 무 | | 지방위임사무 | | 지 방 사 무 | | 관 계 법 령 | (1) 의견조회 |
|--------------------------------------|---------|------|--------|------|-----------------------------|-------|--------------------------|-------------|
| 소9.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제도 운영 | | | | | 3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 |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 | 8 |
| | | | | | 33. 장학금 지급 | | 지방공무원임용 규정 제6조 16호 | 8 |
| 계 | 19 | | 8 | | 33 | | | |
| (2) 종 합 | 이양대상 | 이양확정 | 이양완료 | 사무폐지 | 내용변경 | 타법률승계 | 기 타 | |
| | 2 | 4 | | | | | | |

< 서식 3 >

중앙부처 지방이양 검토의견서

○ 부 처 명

| ①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 ② 근거법령 | ③ 사무현황 | | ④ 사 무 내 용 | ⑤ 이양계획 년도 |
|------------------|--------|--------|------|-----------|--------------|
| | | 사무종류 | 처리권자 | | |
| | | | | | |

< 서식3호 작성요령 >

* <서식2호>중 ①의견조회란에 1(이양대상)로 기재된 사무만 기재

①, ②, ③, ④ :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

⑤ 이양계획 년도 : '96년도, '97 ~ '98년도, '99 ~ 2000년으로 구분 기재

(예시)

중앙부처 지방이양 검토의견서

○ 부 처 명 : 재정경제원

| ①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 ② 근거법령 | ③ 사무현황 | | ④ 사 무 내 용 | ⑤ 이양계획 년도 |
|-----------------------------|--|-------------|------------|-----------------------|-----------------|
| | | 사무종류 | 처리권자 | | |
| 1.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8. 5. 1) | 6개 사무 | | | | |
| ①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및 변경 등록 | 담배사업법 제 13조, 동법시행 규칙 제8조, 제9조 | 지방위임 사 무 | 시·도 지 사 | 제조담배 도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 '96 |
| ②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서식4호 작성요령 >

- ① 기 능 명 : 이양희망 단위사무에 대한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의 코드번호를 기재
(예) 단위사무 : 광역시·도 직속기관의 설치승인의 경우 대기능 4, 지방행정, 중기능 1, 지방조직관리 및 자치제도, 소기능 1,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 『* 4.1.1』로 기재
- ② 소관부처 :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주관과 기재
- ③ 단위사무명 :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무명 기재
- ④ 근거법령 : 단위사무의 근거법령 기재 (위임·위탁사무의 경우 위임·위탁근거를 기재하되, 수입·수탁기관도 표시)
- ⑤ 사무개요 : 단위사무의 사무내용을 약술
- ⑥ 사무구분 :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로 구분 기재
- ⑦ 처리권자 : 원처리권자와 처리권자 기재
- ⑧ 이양받을 자치단체 :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등으로 구분 기재
- ⑨ 처리절차 : 업무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표시
- ⑩ 자치단체 판단이유 : 이양받고자 하는 이유 기술 (별지 작성가능)
- ⑪ 이양후 기대효과 : 지방이양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술 (별지 작성가능)
- ⑫ 참고·기타 : 관련통계, 유사 또는 관련기능, 용어해설, 외국사례등을 기재 (별지 작성가능)

< 서식 5호 작성요령 >

- (1) 소기능명 : 지방이양 관련 목록(별첨)상의 이양대상 사무가 포함된 소기능명을 기재 (예 :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 (2)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 당해 소기능의 『중앙·지방사무 총람』상의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기재 (예 : *4.2.5)
- (3) 단위사무명 : 소기능별로 이양조치(법령개정)된 단위사무명을 기재하고, 사무별 근거 법령 및 이양일자를 ()안에 기재
(예)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②항 : '94. 7. 1)
- (4) 통보관련 근거.제목.이양사실 통보일 : ①통보한 공문의 문서번호, ②공문의 제목 ③주무부처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사실을 공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한 일자(예 : ○○년 ○월 ○일)를 기재
- (5) 통보대상 자치단체 : ① ②번중 통보대상 자치단체 및 기관수를 기입
- (6)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 내용 : 주무부처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를 자치단체에 조정통보한 내용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승인.보고폐지, 사후보고전환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술
- (7) 소기능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지원사항 :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소기능별로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사항을 기입한다.
(예) ①지침부여(2건), ②교육실시 [정기 : 2회
수시 : 1회] 총 3회
③인력(3명) ④예산(1,000천원) ⑤정보.기술제공(4건)
- (8)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 ① 실시년월일 : 실태를 직접 조사한 년월일자
 - ② 주요내용 : 실태확인.평가의 주요착안 사항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사무처리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지식, 능력정도등 파악
 -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 이양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개선요구사항 및 기능이양과 관련된 제반건의내용 기재

※ 1개 소기능상 단위사무의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 근거법령별로 서식 작성 요함.

사무구분 판단기준

1. 적용원칙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을 단위사무, 소기능, 중기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가.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

- (1)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업무인가 ? (중앙)
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편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가 ?
(지방)
- (2) 사무처리 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 ? (중앙)
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지방)
- (3)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전국적인가 ? (중앙)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지역적인가 ? (지방)
- (4)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 ? (중앙)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 ? (지방)
- (5)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적은가 ? (중앙)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많은가 ? (지방)
- (6) 필요한 정보의 수집대상이 전국적인가 ? (중앙)
필요한 정보대상이 지역적 정보인가 ? (지방)

나. 경제적 효율성

- (1) 광역적·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능률성제고 등 이익이 있는가 ? (중앙)
- (2)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 ? (중앙)
- (3)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가 ? (지방)
- (4) 지역적 실험의 필요성이 있는가 ? (지방)

다.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 (1)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정보·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 ? (중앙)
- (2)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한가 ? (지방)
- (3)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 ? (지방)
- (4) 사무이양시 예산·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 ? (중앙)
- (5)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 (지방)

라.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 (1)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 (중앙)
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 ? (지방)
- (2) 제3자적 공정성이 필요한가 ? (중앙)
제3자적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 ? (지방)

마.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

- (1) 일반적인 기준·요건·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업무인가 ? (중앙)
- (2)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사무인가 ? (지방)

2.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예시

가. 지방자치단체 예시 (지방자치법 제9조)

| 기 준 | 사 무 예 시 |
|---|---|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공유재산관리 ○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 기 준 | 사 무 예 시 |
|--|---|
|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농업자재의 관리 ○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농가부업의 장려 ○ 공유림관리 ○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가축전염병 예방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중소기업의 육성 ○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 <p>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 ○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자연보호활동 ○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기 준 | 사 무 예 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도서관·운동관·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 <p>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화재예방 및 소방 |

나. 국가사무 예시 (지방자치법 제11조)

-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3. 사무배분의 원칙 (총무처)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지성·지역성·주민밀착성의 원칙)
 - 각종 기능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계층에 우선 배분
-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 갈등제거의 원칙)
 - 기능별로 사무주체, 감독관계, 경비부담등을 명확히 하여 배분
- 행정능률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능률적 집행의 원칙)
 - 기능별로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계층에 배분
- 행정수요의 특수성 적합의 원칙
 - 모든 기능은 도시와 농촌, 대규모(광역)와 소규모(기초) 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
- 정책·집행 분업의 원칙 (계획과 집행의 분리 원칙)
 - 중앙정부는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및 기준설정을, 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
- 이해관계범위 고려의 원칙 (이해관계 귀속의 원칙)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지방단체는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
- 상호협력의 원칙
 - 중앙·지방간, 인근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공존시 상호협력하여 기능 수행하도록 배분
- 재정·기술능력의 원칙 (경비부담 능력의 원칙)
 - 모든 기능은 재정 및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되, 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한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배분
- 지역종합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 지방적 성격이 강한 기능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배분

4. 국가·지방사무 배분기준의 지표 (총무처)

가. 지표의 분류

| 지표의 종류와 내용 | 중 양 | 지 방 |
|--|--|--|
| <p>대분류를 위한 지표</p> <p>기본지표</p> <p>1차지표 (영향의 범위)</p> <p> 전국적 계획에 의한 조정</p> <p> 사무의 바람직한 적용방법</p> <p> 사무효력의 인정</p> <p>2차지표 (공정성, 형평성)</p> <p> 제 3자적 공정성</p> <p> 자치단체간의 형평성</p> <p>실행지표 (실현가능성) : 3차지표</p> <p>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의</p> <p> 행. 재정. 기술적 동원능력</p> <p> 사무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p> | <p>필요하다</p> <p>통일적 적용</p> <p>전국적이다</p> <p>필요하다</p> <p>필요하다</p> <p>부족하다</p> <p>필요하다</p> | <p>불필요하다</p> <p>지역특성고려</p> <p>지역적이다</p> <p>불필요하다</p> <p>불필요하다</p> <p>충분하다</p> <p>불필요하다</p> |
| <p>세분류를 위한 지표</p> <p>사무의 절차상의 위치</p> | <p>계획. 지원</p> | <p>조사. 집행</p> |

나. 흐름도

